

#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(김진숙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-373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1. 8.  
발 의 자 : 김진숙 의원 등 10 명

## 1. 제안이유

-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·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맞도록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정비함으로써 자율방범대 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용어의 정의 규정 (안 제2조)
- 시장의 책무 신설 (안 제3조)
- 지원 및 지원 절차 등 (안 제4조~ 안 제5조)
- 지원 예산에 대한 정산(안 제7조)
- 자율방범대 지도 및 감독(안 제9조)
- 자율방범대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
3. 전부개정조례안 : 붙임 1

4. 현행조례 : 붙임 2

5. 관계법령 발췌서 : 붙임 3

6. 예산수반사항 : 붙임 4

-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7. 부서검토의견 : 붙임 5

8. 조례안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- 조례안 예고 기간 : 2023. 12. 18. ~ 2023. 12. 26. (8일간)

## 【붙임 1】 전부개정조례안

#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 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자율방범대” (이하 “방범대” 라 한다)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4조제1항에 따라 안산시 관할 경찰서장(이하 “경찰서장” 이라 한다)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.
2. “자율방범연합대” (이하 “연합대” 라 한다)란 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한 단체를 말한다.
3. “자율방범대원” (이하 “대원” 이라 한다)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4조(지원) ① 시장은 방범대 또는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
2.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·보수비
3. 방범초소·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(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) 및 운영비
4.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·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

5. 방법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
  6. 방법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
  7. 그 밖에 방법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
- ② 시장은 방법대 또는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.

**제5조(지원 절차 등)** ① 「자율방법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법대 및 연합대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사업계획서
2. 방법대 및 연합대의 정관
3. 지원금 신청서
4. 지원금 정산서
5. 지출결의서
6. 방법일지
7. 방법순찰 등 활동사진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방법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③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금 신청서 등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6조(지역사회 안전활동)** ① 시장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방법대에 안전확보를 위한 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활동을 수행한 대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7조(정산)**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법대 또는 연합대의 매월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매월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지원중단)**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.

1.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
2.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
3.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

- 4.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
- 5. 그 밖에 방법대 또는 연합대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법대 또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

제9조(지도 및 감독) ① 시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방법대 및 연합대에 예산을 지원한 사업의 실적에 대한 확인·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방법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확인·점검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·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방법대 또는 연합대의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지도·점검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⑤ 제4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제10조(포상)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법대 또는 연합대와 대원에 대해서 법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11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「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속		안산시의회
입 안 자	시 의 원	김진숙 의원 대표발의 (행정 3583)

##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지역 방범 활동을 하고 있는 안산시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“자율방범대”라 함은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.

제3조(임무) 안산시 자율방범대(이하 “자율방범대”라 한다)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취약지역 범죄예방·순찰 및 범죄 신고
2. 청소년 선도·보호 및 미아·기아·가출인의 경찰관서로의 인계
3. 경찰업무 협조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

제4조(지원) ① 시장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초소환경개선비, 순찰차량구입비 등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경비
2. 연수, 체육대회 등 방범대원의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를 위한 경비

② 시장은 자율방범대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활동실적 및 지도점검결과 등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

③ 자율방범대의 평가와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

1. 제3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가 지원기준에 미달된 경우
2.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관한 시장의 시정·지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3.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

제5조(포상) 시장은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 및 모범대원에게 「안산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6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「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(2015.10.19.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제9-373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4. 1. 25.

제안자 : 기획행정위원장

## 수정이유

- 안산시 자율방범대 운영현실에 맞게 조문을 조정

## 주요골자

- 지원 절차와 정산에 관한 사항을 조정(안 제5조 및 제7조)

#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연합대의”를 “연합대가”로 한다.

안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침부하여”를 “침부하여 매월 15일 이내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# 4. 전월 지출정산서

안 제7조를 삭제하고,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정안	수정안
<p>제4조(지원) ① 시장은 방법대 또는 <u>연합대의</u>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5조(지원 절차 등) ① 「자율방법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법대 및 연합대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<u>첨부하여</u>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지원금 정산서</u></p> <p>5. ~ 7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<u>제7조(정산)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법대 또는 연합대의 매월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매월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제8조 ~ 제12조</u> (생략)</p>	<p>제4조(지원) ① ----- <u>연합대가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7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5조(지원 절차 등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첨부하여 매월 15일 이내에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3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<u>4. 전월 지출정산서</u></p> <p>5. ~ 7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·③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<u>제7조 ~ 제11조</u> (개정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)</p>